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0
----------	-----

2025. 3. 21.(금)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옥규 의원 등 8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 라. 상정일자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사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꽃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포함 내용을 구분하여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목적 조항 자구 수정(안 제1조)
-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정비 및 시행계획 포함 사항 신설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조례의 제명과 취지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목적 조항의 개선이 필요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해야 함
- 충청북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에 대한 구분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명시적 규정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등 법령과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갖추고 노동안전보건 기본·시행계획의 효율적 운용 필요가 있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제명 및 조례의 취지와 일치하도록 “노동안전보건 강화”를 “노동안전보건 지원” 정비하는 등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음
- 안 제2조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노동안전보건”, “사업주”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의 개정은 타당함

- **안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안 제6조 제3항**의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근거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의 목적에 제명 및 조례의 취지를 반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정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분하여 새롭게 정비,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예측가능성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근거 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노동안전 보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함
다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870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0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 의 자 : 이옥규,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이상식

1. 제안이유

-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포함 내용을 구분하여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목적 조항 자구 수정(안 제1조)
-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정비 및 시행계획 포함 사항 신설(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3.
- 협 의 :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비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를 “노동안전보건 지원에”로, “증진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를 “노동자를 사용하여”로 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및 지역별·업종별 등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별·업종별 등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5.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북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업종별 등 실태 분석
2.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u>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u>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u>증진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노동안전보건 지원에</u> ----- ----- ----- <u>향상시키는 것</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u>노동안전보건</u> ”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u>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u>	2. “ <u>노동안전보건</u> ”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u>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u>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u>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 - <u>노동자를 사용하여</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생 략)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 보건대책 마련
4.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8.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9.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및 지역별·업종별 등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별·업종별 등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5.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산재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청북도 -----.

1.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업종별 등 실태 분석
2.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관련 내용 정비하여 효율적인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

2. 비용 발생 요인

- 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관련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비용 소요

3. 관련조문

- 안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5년간 총370,400천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 290,400천원(도비 152,700, 시군비 137,700)
· 58,080천원(도비 30,540 시군비 27,540) x 5년 = 290,400천원
-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7~'30) : 80,000천원(도비)
※ '23~'26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연구용역 비용(80,000천원) 참고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정 영 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58,080	138,080	58,080	58,080	58,080	370,400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58,080	58,080	58,080	58,080	58,080	290,400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연구용역		-	80,000	-	-	-	8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540	110,540	30,540	30,540	30,540	232,700
	지방세	30,540	110,540	30,540	30,540	30,540	232,7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27,540	27,540	27,540	27,540	27,540	137,7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